

논문지 투고규정

제정 2008. 1
개정 2009. 1
개정 2013. 11
개정 2015. 12
개정 2016. 7
개정 2019. 12

제 1장 총 칙

- 제1조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은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정보보호 및 그 응용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일 것
나.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다. 독창성이 인정되는 내용일 것
- 제2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 제3조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논문의 형태는 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에 따라 일반 논문과 짧은 논문으로 구분한다. 짧은 논문은 일반논문에 비해 주제의 범위가 좁고 매수가 4쪽 이내의 논문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긴급으로 배포할 구체적이며 명료한 주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제5조 논문지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발행하며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한다.

제 2장 논문의 접수 및 투고

- 제6조 원고채택여부는 본 학회의 논문지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원고는 수시로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원고의 투고일은 온라인 접수가 확인된 날로 한다. 게재 확정일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결과, 게재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 제8조 투고 시,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전체 저자 명단을 입력해야 한다. 투고 후 저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저자의 변경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 제9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처음 기재된 저자를 제 1저자로 간주하며, 타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공동저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교신(책임)저

자를 지정·명기할 수 있다.

- 제10조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편당 50,000원)를 논문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단, 긴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짧은 논문의 심사료는 50,000원이다.

구분	일반 논문	짧은 논문	긴급 논문
심사료	5만 원	5만 원	30만 원

제 3장 원고관련 사항

- 제11조 제출 원고는 투고용(심사용) 및 게재용 원고의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용지 기준으로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0매 이내로 한다. 단, 짧은 논문은 4매 이하로 제한한다.
- 제12조 투고용(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제13조 제출 원고는 줄 간격 150%, 2단(2-column)으로 작성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제출한다. 게재용 원고에는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과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그리고 간단한 약력(연구분야 포함)이 기재된 저자 소개란을 포함시킨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주저자에는 * 기호를, 교신저자에는 ✉ 기호를 성명 뒤에 위첨자로 표시한다. 소속 기관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1, 2, 3, ...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 성명 뒤와 소속기관 앞에 위첨자로 표시한다. [소속기관에서의 직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예) 홍길동, * 이순신*
(예) 홍길동, ^{1*} 이순신^{2✉}
¹한국대학교 ([대학원생](#)), ²한국연구소 ([연구원](#))
- 제14조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논문제목, 저자 성명, 저자 소속기관 및 직위, 요약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국문요약은 700자 이내, 영문 요약은 250단어 이내로 한다.
- 제15조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 제16조 영문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쓴다.
- 제17조 논문은 국문요약, 영문요약,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하고, 영문 요약하단에 5개 이하의 keyword를 기재한다. 영문논문의 경우는 국문으로 작성되는 부분을 생략한다.
- 제18조 장에 해당되는 전호는 로마자 (I, II, III, IV, ...)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숫자(1, 2, 3, 4, ...)로 표기한다.
- 제19조 그림, 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과 함께 페이지를 정하고 그림 또는 표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 놓고 설명을 쓰되 그림은 공간 하단에 표는 상단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 제20조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 호, 면수, 월, 연도

나.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주소지, 면수, 연도

[1] Gil-dong Hong and Sun-sin Lee, "The subject of an essa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10(2), pp. 100-103, Feb. 2012

[2] W. Diffie and M.E. Hellman,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vol. IT-22, no. 6, pp. 644-654, Nov. 1976.

제21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 순서에 따라 인용문 우측 상단의 []안에 기입한다.

제 4장 논문심사 및 출판

제22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본 학회의 논문지 심사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된다.

제23조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의 경우, 재심 판정을 전달받은 이후로 일반 논문 및 짧은 논문의 경우는 1개월 이내, 긴급 논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긴급심사를 요청한 경우, 1심에 대한 결과는 1개월 이내에 확정된다. 짧은 논문은 1차 심사만으로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짧은 논문은 수정후 재심이 없다.)

제25조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을 접수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논문 게재료는 아래표와 같이 적용한다. 단, 긴급논문의 경우, 1차 심사완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일반논문의 게재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분	일반 논문	짧은 논문	긴급 논문
기본 6면(페이지) (짧은 논문: 4면)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7면(페이지) 이상	30,000원/면(페이지)	N/A	60,000원/면(페이지)

논문에 지원기관을 명시할 경우 추가로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료는 최종심사 결과 이후 즉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출판사로 원고가 이송되지 않는다.

제27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0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는 게재 통보 시 필요부수를 결정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 및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가지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29조 저자는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시된 저자점검표를 통하여 작성된 논문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시 본 학회는 해당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 5장 연구출판윤리

제30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고,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들)이 진다. 별도 제정된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를 따른다.

제31조 투고된 논문은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과 국제표준출판윤리 COPE Flow Chart를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08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② 개정한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개정한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④ 개정한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⑤ 개정한 본 규정은 2016년 7월 15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⑤ 개정한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